

의안번호	제 86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육미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발 의 자 : 육미선, 임영은, 이옥규,
박상돈, 심기보, 오영탁,
송미애

1. 개정이유

-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약칭의 사용(안 제5조)
 - 도 →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5조, 제8조)
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→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 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아닌한 → 않은
- 범위내에서 → 범위에서
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**아니한**”을 “**않은**”으로, “**가산금을합산하여**”를 “**가산금을
합산하여**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**도**”를 “**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**”로 하고, 같은
조 제3항제1호라목 중 “**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**”을 “**「5·1
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
나목 단서 중 “**범위내**”를 “**범위**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**「아이사랑
보너스카드**”를 “**“아이사랑보너스카드”**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**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
규칙**”을 “**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2항 중 “**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**”을 “**「지방행정제
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**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**관하여 필요한**”을 “**필요한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주차요금 징수)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<u>아니한</u> 사람 : 그 주차요금의 1배의 <u>가산금을 합산하여</u> 부과</p> 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관용차량(<u>도, 시·군·사업소</u> 등의 차량을 말한다)</p> <p>3. ~ 1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</p>	<p>제4조(주차요금 징수)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<u>않은</u> 사람 : 그 주차요금의 1배의 <u>가산금을 합산하여</u> 부과</p> 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관용차량(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, 시·군·사업소</u> 등의 차량을 말한다)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주차요금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</p>

현행	개정안
<p>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80퍼센트 감면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는 충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요금 면제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「아이사랑보너스카드」</p>	<p>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80퍼센트 감면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50퍼센트 감면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는 충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 면제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“아이사랑보너스카드”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.</p>	<p>소지자 또는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)를 제시하는 경우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따라 도금고에 다음 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징수절차에 따른다.</p>

현행	개정안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